

#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용자금 지원 관련 안내

## 1 관련규정

- [지원대상자]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1항제1호
  -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,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
- [지원대상품]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제1항제4호
  - 용자지원 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시설·장비
  -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호조치가 완비된 유해·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·기구
- [지원대상품] 용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[별표 1]
  -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“안전인증” 대상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

## 2 지원 가능대상

- 제조·서비스업 등 사업주 용자금 신청 희망 시
  - 지원대상 이동식크레인이 “자가소유”인 경우 ☞ 지원 가능
  - 지원대상 이동식크레인이 “임대(리스)”인 경우 ☞ 지원 불가
- 임대업 사업주 신청 시
  - 임대업 소속 근로자가 임차사업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 ☞ 지원 가능
  - 임차사업장으로 크레인만 임대(리스)하는 경우 ☞ 지원 불가

### 3 지원대상품 구분

#### ○ 신규설치(신차 + 신규크레인)

-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 및 크레인 옵션, 장착비용 ☞ 지원 가능
- 차량 및 기타옵션 ☞ 지원 불가

#### ○ 교체설치(기존 중고차량 + 신규크레인)

-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 및 크레인 옵션, 장착비용 ☞ 지원 가능
- 차량수리비 및 기타옵션 ☞ 지원 불가

·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: 교통안전공단 튜닝승인서([별첨] 참조)

\* 기존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를 보조지원 받은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사업주의 **자진취소 및 환수 완료** 이후 용자금 신청 가능

#### ○ 지원대상품목 세부사항

구분	지원가능사항 세부내용(조건)	비고
크레인	' 21. 1.17. 이후 제조·수입되어 전도 방지장치*가 설치된 안전인증 크레인	*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[별표2] 99번 전도방지장치
크레인 옵션	보조원치, 보조뿔, 중간아웃트리거	안전인증과 관계없는 캐빈, 앞자키, 리모콘 등 기타옵션 지원 불가
장착비용	구조변경 및 웨이트 비용	그 외 철판보강, 장비시동장치 등 수리·보강비용 지원 불가

### 4 신청 시 유의사항

○ 동 지침은 '21. 4. 19.(월) 이후 신청 사업장부터 적용함

○ 이동식크레인 용자금 지원과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리스·할부지원의 **중복 신청 불가**(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후 지급 사업장은 용자 신청·접수 불가)

## 1 튜닝승인서 양식(교통안전공단)

제 호			
튜닝승인서			
신청인	성명(명칭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	(전화번호 : )	
자동차	차명 및 형식		차대번호
	등록번호		원동기형식
튜닝 승인 내용	항목	튜닝 전	튜닝 후
	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합니다. 년 월 일		
			교통안전공단이사장 <input type="checkbox"/>

## 2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의 등록방법

구분	튜닝승인
방법	기존 등록된 차량에 이동식크레인 장착 후 승인
절차	①사용자가 차량 먼저 구매(또는 기존보유) → ②이동식크레인 제조사에 장착 의뢰 → ③교통안전공단 튜닝승인

## 3 튜닝승인 세부절차

### ○ 튜닝승인 절차



- 튜닝신청 : 기존 차량의 구조변경 내용에 대한 서면심사 신청
- 자동차튜닝작업 : 교통안전공단 서류심사 후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및 장착
- 튜닝검사 :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검사